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계 30320-2747	(전화: 731-6353)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SECRET	
시행일자	'90. 12 14	1990. 12. 14	
보조 기 관	부시장 <b>전결</b>	협조 기 관	법무담당관 <b>관</b>
	도시계획국장		외계심사관
기안책임자	완적계장 노경찬		관계장 <b>mpc</b>
경유 수신 참조	국안참조	발신 명의	시 장
제 목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 인가		
제 1 안	내부결재		
제 목	같은건		
<p>1. 우리시에서 '90.12 사업시행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중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반포, 양구정 아파트 지구내 일부 공공시설(도로, 공원)의 미설치와 아파트 지구 잔여지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어 부득이 '91.6.30까지 완적확정 처분의 연기가 불가피함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권계서류의 공람)및 제14조(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같은법 시행령 제4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 조치 합니다.</p> <p>가.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내역</p>			

1990. 12. 14  
부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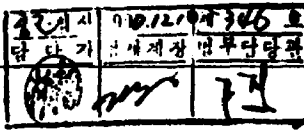
1990. 12. 14  
관계장


1990. 12. 14  
발송인

1990. 12. 14  
공시공고

1990. 12. 14  
제 61 호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공공시설(도로, 공원)의 미설치와 아파트 지구 잔여지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

지구명	시행면적	시행처	사업시행기간		비고						
			당초	변경							
영동지구	26,764,872.9 <sup>m</sup> <sup>2</sup>	서울특별시	'68. 1.18-	'68.1.18-	6개월 연장						
	총 5,421,066.6 <sup>m</sup> <sup>2</sup>	시정	'90.12.31	'91.6.30							
나. 공고개요 <span style="float: right;">(KMP 13)</span>											
1) 공고종별 : 일간지 2개사 및 관(시)보 1개											
2) 소요예산 : 1,219,680원 (26,400원×3단×76m×2사×1.1)											
3) 지출과목 : 계속지구, 영동토지, 사무관리, 수용비및수수료											
4) 지출방법: 공고후 청구에 의하여 지출											
제 2 단			<table border="1" style="float: right;"> <tr> <td>공고시</td> <td>1990.12.19</td> <td>제 306 호</td> </tr> <tr> <td>담당자</td> <td>김재정</td> <td>업무담당관</td> </tr> </table>			공고시	1990.12.19	제 306 호	담당자	김재정	업무담당관
공고시	1990.12.19	제 306 호									
담당자	김재정	업무담당관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611 호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 공고											
1. 건설부 공고 제6호('68.1.18) 및 제8호('68.1.23), 제77호('71.8.24)로											
사업시행인가된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지구중 완지확정 처분 미완료된 반포, 압구정											
파트 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 하였거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를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0. 12.											

인본대조필  


서울특별시

0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내용

지구명	시행면적	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비고
			당초	변경	
영등지구	26,764,872.9m <sup>2</sup> 중	서울특별시	'68. 1.18-	'68.1.18-	6개월 연장
	5,421,066.6m <sup>2</sup>		'90.12.31	'91.6.30	

끝.

제 3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같은건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영등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 하였던 통보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있기 바람

첨부 : 공고문 사본 1부. 끝.

수신처 : 종합건설본부장(토목부장), 주택기획과, 도시계획과, 강남구, 서초구(도시정비과)

관계과장.

제 4 안

수신 : 공보관

발신: 과장  
부시장

제목 : 공고개제여력

1. 우리시에서 사업 시행중인 영등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지구중 연포,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사본)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 되었기 2개

1988. 9. 23  
도시정비과  
부시장

일관신문및 시보공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1안 낙항(1-4) 여거서영

첨부 : 공고문 (사본) 3부. 끝.



제 5 안

수신 : 총무처장관

참조 : 법무담당관

제목 : 관보공개의뢰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

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인가 하였던 관보공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 사본 2부. 끝.

제 6 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개발국장

제목 : 사업계획(기간연기)인가 보고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

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인가 하였던 보고합니다.

첨부 : 공고문 사본 1부. 끝.

19 . . . . . 인공본조필